

리딩에머슨자산운용(주) 임원 선임·해(사)임 보고

문서번호 : 2018-04-002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사본수신 :

제 목 리딩에머슨자산운용(주) 임원 선임,해(사)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리딩에머슨자산운용(주)의 임원 선임 및 해(사)임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 임 : 1. 임원의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1부
3. 임원의 해(사)임 내용 1부. 끝.

리딩에머슨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송 수 일 (인)

본점소재지: 04539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서관 13층
작 성 자 : 사원 유 고 은
전화번호 : 02-6030-4809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6자 리)	선임일 (최초선임 일, 선임회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 위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자격요 건 확인결 과 ³⁾
기타비상무 이사	임정환 (林正 桓)	770209	2018.03. 30 (최초선임)	3년 (2021.03.2 9)	경영자 문	2014.08 ~ 현재 도담에스테이트 주식회사 2013.11 ~ 2014.07 안강산업 (마곡지구 오피스텔 사업진행) 2006.07 ~ 2013.04 화인어드벤처자산 운용 주식회사	2014.08 ~ 현재 도담에스테 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결격사 유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1.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및 등기 여부)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회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1)	겸직사항2)	비 고
대표이사 (상임,등기)	송수일 (宋秀一)	661209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2014.06 ~2018.01 동양생명 기업금융담당 이사 2002.09 ~ 2014.05 동양생명 기업금융팀장	해당사항 없음	
감사 (비상임,등 기)	이병기 (李炳基)	721121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2017.06 ~ 2018.03 에머슨자산운용(주) 대표이사 2016.06 ~ 2017.06 에머슨기업관리자문(상 해) 유한회사 부사장 2011.04 ~2016.06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북경분행 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상무이 사 (비상임, 등기)	송한호 (宋漢祐)	711130	2018.03.23 (최초선임)	3년 (2021.03.2 2)	2015.12 ~ 현재 리딩투자증권 헤지펀드운용본부 본부장 2011.12 ~ 2015.11 메리츠증권증권 투자금융본부 이사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헤지펀드운용1 본부 본부장 (헤지펀드운용 총괄) 2015.12.01 ~ 현재	
기타비상무이 사 (비상임, 등기)	이종렬 (李鍾烈)	671030	2018.03.23 (최초선임)	3년 (2021.03.2 2)	2004.04 ~ 현재 도담에스테이트 사장	도담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사장 (경영총괄) 2004.04.30 ~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임정환 (林正桓)	770209	2018.03.30 (최초선임)	3년 (2021.03.29)	2014.08 ~ 현재 도담에스테이트 주식회사 2013.11 ~ 2014.07 안강산업 (마곡지구 오피스텔 사업진행) 2006.07 ~ 2013.04 화인어드벤처자산운 용 주식회사	도담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4.08 ~ 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이대현 (李大賢)	670403	2018.03.23 (최초선임)	3년 (2021.03.22)	2015.12 ~ 현재 에머슨퍼시픽 이사 2014.07 ~ 현재 중국민생투자유한공사 전략투자실 실장 2012.07 ~ 2014.07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북경분행 부분행장	에머슨퍼시픽 이사 (경영총괄) 2015.12 ~ 현재 중국민생투자유 한공사 전략투자실 실장 (경영총괄) 2014.07 ~ 현재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임 정 환	직 위	기타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결격 사유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결격 사유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 사유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 사유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결격 사유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결격 사유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결격 사유 없음	

성 명	임 정 환	직 위	기타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사외이사 해당사항>			
II.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 사항 없음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 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해당 사항 없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해당 사항 없음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 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 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 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 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	해당 사항 없음	

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성 명	임 정 환	직 위	기타비상무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해당 사항> 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 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 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 사항 없음	
<u>중 합 의 건</u>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년 4월 9일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수일 (인) 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 기타비상무이사 임정환(인)		

【첨부서류】

1.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2.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3. 소속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3)

임원 해(사)임 내용

1. 사임

직 위 (상임여부)	성 명	사임일	사 유	비 고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홍창환 (洪昌煥)	2018.3.30	일신상의 사유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회수)	임기만료일	비 고
대표이사 (상임, 등기)	송수일 (宋秀一)	661209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감사 (비상임, 등기)	이병기 (李炳基)	721121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송한호 (宋漢祜)	711130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이중렬 (李鍾烈)	671030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임정환 (林正桓)	770209	2018.03.30 (최초선임)	2021.03.29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 등기)	이대현 (李大賢)	670403	2018.03.23 (최초선임)	2021.03.22	